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 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이유서

의안번호

42

제출년월일 : 1991. 9. 26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재 정 이 유

-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투자규모가 크고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이므로 이 사업을 통한 수입과 비용을 명확히 정산할 필요가 있고
- 민간자본 재원조달시 이자수입 등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조성원가계산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 한시적 일반특별회계 방식을 택함으로써 사업종료후 사업투자비의 수지분석이 용이함.

2. 주 요 골 자

- 조례목적 :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시행에 있어 민간자본 도입 및 회계관리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적용사업범위 :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부대공사
- 사업의 시행
 - 부산직할시 사하구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행정조치
 - 민자투자자
 - 공사시행(도로개설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조달 포함)
- 특별회계설치 :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설치
- 세 입 : 선수금 및 조성부지 매각수입금 등 기타 수입금
- 세 출 : 토지 보상, 사업비 정산 등 사업에 관련된 제반사업비 및 제비용
- 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공무원 지정
 - 징수관 : 총무국장

- 경리관 : 총무국장
- 채권관리관 : 도시개발과장
- 채무관리관 : 도시개발과장

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동법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 지방자치법 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 지방자치법 제117조(회계의 구분)
- 지방재정법 제5조(회계의 구분)

4. 주요사업계획

가. 위치 : 사하구 장림동 1033번지 일원

나. 개요

- | | | |
|---------------------|----------|-------------------------|
| ○유수지 이설 | 배수펌프시설 | : 500HP×8대 |
| | 자연배수문 | : 10×4m, 2기 |
| | 어선계류장 | : L=300m, B=21m |
| | 신설유수지 축조 | : A=56,500㎡ (840×67.3m) |
| ○고지배수로 및
간선하수시설 | 고지배수로 설치 | : L=2,889m |
| | 계획도로개설 | : L=780m, B=20m |
| | 간선하수시설 | : L=2,776m |
| ○공유수면매립 및
공업용지조성 | 현 유수지 매립 | : A=49,000㎡ |
| | 공유수면매립 | : A=68,000㎡ |
| | 호안도로 축조 | : L=460m, B=20m |

○부대공사 1식

다. 사업기간 : 1993. 4-1996. 12

라. 소요사업비(민간자본 : 583억6천만원)

○공사비-350억원

- 보상비-161억원(선수금)
- 감리비-12억원(선수금)
- 기 타-60억6천만원(이자)

5. 사업추진 절차 이행사항

- 지역주민공청회 개최(사하구) : '90. 4. 27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부산시) : '90. 11. 14
-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완료(사하구) : '90.12. 29
- 공유수면 매립승인(항만청) : '91. 3. 8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부산시) : '91. 6. 10

-도로, 유수지

- 민자유치 투자심사 심의(부산시) : '91. 8. 13

-결정사유 : 재해예방 대책사업 일환으로 기존 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

사업시행기관 : 사하구

재원조달방법 : 민간자본 도입(보상 : 선수금, 공사 : 민간자본)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시) : '91. 4. 26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 어민피해에 대한 어업손실 보상액조사 용역(구) : '92. 8. 31
- 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청→구) : '93. 1. 19
-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항만청→구) : '93. 4. 14

첨부 :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립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안) 1부.